

#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 Consortium Blockchain Utilization in Insurance Industry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이 창 규\*

Chang-Kyu Lee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 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OECD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문 색인어:**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반경쟁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130320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기술거래사(cklcode@gmail.com), 제1저자  
논문 투고일: 2020. 1. 30, 논문 최종 수정일: 2020. 8. 17, 논문 게재 확정일: 2021. 2. 18

## I. 서론

주지하다시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은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을 기초로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든지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기반의 원장관리 기술이다(유거송·김경훈 2018).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분산관리 및 공유하는 방식이며, 2016년 8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10대 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8).

우리나라도 2020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기술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예정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합동해 공동의 본인확인 절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의 조달 방지를 위한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sup>1)</sup> 특히,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는 점은 분산된 참가자(node)에 의한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기능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대부분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유거송·김경훈 2018).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을 위한 실증시험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블록에 저장되는 정보를 참가자가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간소화·신속화·자동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업이 진행되었다(김현수·권혁준 2018; 맹수석 2019). 이같이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안에서 본인확인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되어 보험사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혁신적 과학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민하여,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예산이 2019년 117억 원에서 2020년 161억 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자체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 규모만 총 5600억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이대희 2018; 최용혁·권형영 2018). 그러나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지칭함) 위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로 지칭함)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령, OECD는 2018년 4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 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OECD 2018).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이하 “II. 1.”). 이어서 해외에서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이하 “II. 2.”). 이후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공정거래법에서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OECD 보고서를 분석하고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에서의 공정거래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본다(이하 “III. 1.”).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에서의 부정청구 등 방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이하 “III. 2.”).

## II.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개념과 해외 주요국의 현황

### 1.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개념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이란 같은 목적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블록체인이다(유계송·김경훈 2018). 예를 들어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이 주도하고, IBM 등이 참여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프로젝트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 형태이지만, 이를 별도로 구별하여, 하이브리드 블록체인(hybrid blockchai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서영희 외 2017).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과 동일하게 승인이 필요한 블록체인이다. 다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한 집단의 독자적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몇몇 특정한 집단이 참가하여 해당 집단만이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8).

보험산업에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식은 고객 본인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및 관리하도록 하여 여러 보험회사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금융보안원 2018).<sup>2)</sup> 또한, 블록체인에 의해 신디케이트(Syndicate), 공제조합(risk pool),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시장에서 복잡한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시장접근이 쉬워지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재해연계증권(catastrophe bond)과 재보험 발행에 있어서, 지금까지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Cognizant 2016).

그리고 만일 자동차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이력정보 및 사고경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정보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험의 인수 시에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적절한 보험료 산정을 진행할 수 있다(김현수·권혁준 2018). 보험회사만의 노력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보험사기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들이 협업한다면, 보험사기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객과 대리점 브로커, 보험회사 사이에서,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험청구의 대응 상황도 공유할 수도 있다. 나아가 규제 감독당국의 규제준수에 관련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 2. 해외 주요국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활용과 공정거래 문제

### 가.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의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는 2016년 10월에 유럽의 보험회사, 재

2)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는 고객확인(KYC)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KYC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 5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 프로젝트이다(Cognizant 2016).<sup>3)</sup> 이 컨소시엄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업계가 공동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Cognizant 2018).

B3i의 블록체인기술은 자연재해로 인한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excess of cover)에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부터 B3i 참가자들 사이에서“Codex 1”으로 호칭되고 있는 이 유형은 현재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가 사용 중이다(Enrico Alessandri 2018). Codex 1은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에 관한 사무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사이에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실 원래 재보험은 각 국가별로 규제의 정도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의 표준화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B3i 참여회사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에 관련된 재보험에 관한 거래를 더 수월하도록 준비를 진행해왔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을 블록체인이 적용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왔다.<sup>4)</sup> 이 플랫폼은 보험시장 참가자들이 수월하게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B3i는 2017년 중반까지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의 취급에 관련된 블록체인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이후에 2017년 10월까지 38개의 보험회사, 중개인, 재보험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프로토타입은 재보험 거래의 효율성이 최대 30%나 향상되는 등 거래처리가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sup>6)</sup>

3)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다. 에이곤(Aegon), 알리안츠(Allianz), 뮌헨 재보험(Munich Re), 스위스 재보험(Swiss Re), 취리히(Zurich)의 5개로 처음 구성되었다. 이후 2017년 초 네덜란드의 아흐메아(achmea), 벨기에의 아지아스(Ageas), 이탈리아의 제네라리(Generali), 독일의 하노버 재보험(Hannover Re), 미국의 (Liberty Mutual), RGA 재보험(Reinsurance Group of America), XL 케이틀린(XL Catlin), 프랑스의 스코르 재보험(SCOR), 일본의 도쿄 해상 홀딩스(Tokio Marine Holdings, Inc.)가 참여하였다.

4) 자세한 현황은 B3i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https://b3i.tech/home.html>).

5) 이 플랫폼은 리눅스 재단(The Linux Foundation)의 하이퍼레저 페브릭(Hyperledger Fabric)의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로서 IBM의 지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IBM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https://www.ibm.com/kr-ko/blockchain/hyperledger>).

6) 자세한 현황은 B3i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https://b3i.tech/home.html>).

전통적인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에 관한 재보험 업무는 재보험 브로커가 여러 재보험 회사에 견적을 받아 위험평가와 가격설정의 조합이 가장 유리한 경우를 출재 보험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때 브로커는 개별적인 거래조건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진행한다. 이러한 거래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B3i의 Codex 1에서는 보험료 지불과 보험금 지급의 양쪽의 절차가 블록체인에 의해 자동화되고, 특히, 출재보험 회사와 재보험 회사는 서로의 견적 조건을 모르는 것이 보증되는 것이 특징이다.

### 나. 미국의 리스크 블록 조합의 보험대위

더 인스티튜츠 리스크 블록 조합(The Institutes Risk Block Alliance)은 인증손해보험사(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 CPCU)가 인증한 단체로서 미국 인증손해보험사 연구소의 관계기관이다(The Institutes CPCU Society 2018). 2017년에 보험 및 위험 관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결성을 발표한 이후에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등을 합하여 18개의 회사가 참가한다고 2018년 2월에 발표하였다.<sup>7)</sup>

이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자면, 2018년 4월부터 블록체인 컨소시엄 보험대위에 대한 청산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sup>8)</sup> 이 기관이 고안한 보험대위에 관한 블록체인은 청산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보험대위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자동화된다면 관리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7) 18개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국 농업보험회사(American Agricultural Insurance Company),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American Family Insurance), 처브(Chubb), 에리 보험(Erie Insurance), 농부보험(Farmers Insurance), 하노버 보험 그룹(The Hanover Insurance Group), 호레스 만 교육기업(Horace Mann Educators Corporation), 리버티 상호 보험(Liberty Mutual Insurance), 마쉬(Marsh), 뮌헨 재보험(Munich Reinsurance America, Inc.), 네이션 와이드 보험(Nationwide Insurance), 오하이오 상호 보험 그룹(Ohio Mutual Insurance Group), 펜 내셔널 보험(Penn National Insurance), 르네상스 재보험(Renaissance Re), 스테이트 자동차 상호보험회사(State Automobile Mutual Insurance Company), 유나이티드 에듀케이터(United Educators)이다.

8) 미국 CPCU 협회의 “The Institutes RiskStream Collaborative™ Announces Plan to Launch Blockchain-based Subrogation Tool”를 참고하였다(<https://bit.ly/37tXABm>).

## 다. 유럽 주요국의 보험협회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도입

### 1) 독일 보험협회의 도입례

독일 보험협회(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GDV)는 2018년 4월에 발행한 “디지털화 특별판 No. 1(DIGITALISIERUNG No. 01)”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하며, 보험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절차를 보다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이후 회원사와 함께 분석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분석된 활용 사례는 11개의 분야이다. 손해보험은 공동보험사업(Mitversicherungsgeschäft, ++), 보험금 지급(Schadenbearbeitung/-regulierung +), 자동차(Automobil +), 주택(Wohngebäude +)이다. 평가는 (+)가 많을수록 적합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인보험은 연금정보(Renteninformation +), 노령연금(Altersvorsorge ++), 단체계약(Kollektiv-/Gruppenverträge -)이고 이와에 자본투자(Kapitalanlage -), 보고 및 감독절차(Melde-/Aufsichtsprozesse -), 식별 및 인증(Identifizierung/Identitätsprüfung +), 정보시스템(Hinweis- und Informationssystem -)이 평가를 받았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각각의 활용 사례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경우의 편의성, 복잡성, 위험성의 3가지 평가 기준에서 분석하였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특히,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서 손해보험 분야의 보험회사 간의 “공동보험사업(Mitversicherungsgeschäft)”을 (+)로 평가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특히 권장하고 있다. 또한 B2G(Business to Government) 거래에서 노령연금을 (+)로 평가하고, 노령연금 보험료의 납입정보를 보험업계와 정부가 공유하는 블록체인으로 관리 할 수 있다면, 처리 효율의 대폭적인 향상을 전망하고 있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앞서 언급한 11개의 사례는 보험업계 전체의 구조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활용을 통해 정보교환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기회(혜택)와 위험(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 2) 프랑스 보험협회의 도입례

### 가) 프랑스 보험협회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프랑스 보험협회(Fédération Française de l' Assurance : FFA)는 2017년 11월 디지털위원회 블록체인 실무그룹의 구성원으로 14개의 보험회사가 고객의 계약정보를 기초로 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시험을 진행하였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뛰어난 효율성 및 안정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sup>9)</sup> 이 시험의 목적은 보험회사 사이에서 취급되는 복잡한 데이터 교환업무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하몬법(Loi Hamon, LOI n° 2014-344 du 17 mars 2014 relative à la consommation (1))<sup>10)</sup>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자동차 보험과 주택보험에 대한 계약자는 최초의 보험회사와의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져, 보험계약에 대한 보상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다른 보험회사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sup>11)</sup>

이러한 하몬법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험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주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먼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보험회사에게 해당 피보험자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이전해야 했다. 그런데 프랑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무절차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해 왔으며, 계약정보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자동화된 방식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전자등기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정보입력의 오류 등의 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되었다(Nicolas Beyer, 2018).

이에 전자등기 서비스와 정보 교환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제안된 것이 블록체인

9) FFA의 홈페이지의 “Trial of an inter-insurer blockchain for the exchange of secure data”를 참고하였다(<https://bit.ly/36uLiHo>).

10) 소비자 권리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2011/83/EU of October 25, 2011)이 프랑스에서 법제화된 법률이다.

11) 하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일단 보험계약의 체결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계속 조건에 따라 만기일의 2개월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보험계약자가 해약하더라도 보험대상의 소유권 이전 및 주소 변경 등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였다.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교환업무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신생기업 스트라텀(Stratumn)<sup>12)</sup>은 프랑스 보험협회의 주요 회원사인 14개사 및 감사자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와 협업하여 보험회사 사이의 정보 교환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였다.<sup>13)</sup>

이 방식은 기존의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상조건의 변동 없이 새롭게 계약조건이 계속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모든 정보가 암호화 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보험회사는 정보가 교환되는 업무절차에서 네트워크에 따라 이전되는 고객의 정보교환에 관한 정보의 모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프랑스 규제 당국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교환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하몬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PWC 2017).

이 블록체인 기술활용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위해 14개의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후 40개로 참여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특히, 테스트베드를 진행한 이후에 2018년부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 컨소시엄은 고객이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고객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변경하더라도 보상의 중단없이 보험계약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컨소시엄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sup>14)</sup>의 “(97)”<sup>15)</sup>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12) 스트라텀(Stratumn)은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신생기업이다. 블록체인 앱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탑재 되니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13) 스트라텀(Stratumn) 홈페이지의 “Deloitte partners with Stratumn and presents a micro-insurance proof-of-concept built on the blockchain”를 참고하였다 (<https://stratumn.com>).

14) 영문명은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2011/C 11/01)”이며 이 지침은 경쟁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구매, 표준화 활동 및 정보교환 등의 수평적 협정에 대해 어떤 경우 EU 기능 조약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쟁 제한적 협정이나 공동 행위에 위반된다고 평가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15) “(9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를 갖는 시장의 사업자 간에 소비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채무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의 과거 행동을 추적하는 것은 고객의

## 나) 피보험자 손해의 직접 보상과 자동차 보험회사 간 구상협정에 활용

감사자문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 PwC)는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보험자 손해 직접 보상과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협정에 블록체인 기술활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PWC, 2017). “피보험자 손해의 직접 보상과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협정(Convention d' Indemnisation directe de l' assuré et de Recours entre Sociétés de Automobiles, 이하 “IRSA 협정”으로 지칭함)”은 자동차 대물사고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의 단축, 관련 보험회사의 책임분담 비율의 결정 간소화, 사고관리 비용의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WC 2017).

프랑스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의 단축을 위해 사고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물 배상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분을 대신 받는 직접 보상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계 보험회사의 책임분담 비율의 결정에 대한 간소화를 위해 사고의 책임의 분담비율은 0:100, 50:50, 100:0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대물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받은 뒤, 보험회사 사이에서 구상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손해액이 6,500유로(약 842만 원)인 경우에는 1,446유로(약 187만 원)의 일정액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하여, 손해액이 6,500유로(약 842만 원)를 초과하면 실제 손해액에서 구상이 이루어진다(PWC 2017).

---

위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된다.  
어떤 소비자가 더 낮은 위험, 낮은 가격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보교환 활동은 소비자의 고정화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더 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관계자 간의 특유이며, 소비자가 다른 회사로 전환하면 기존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던 정보에서 이익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예는 은행 분야 및 보험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그 위험 특성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라. 인도 보험업계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도입

인도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명보험 가입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도의 보험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PWC 2019). 2018년 연초 이후 ICICI(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푸르덴셜 생명보험(Prudential Life Insurance), 주택개발은행(HDFC Ltd: Housing Finance) 생명, SBI(State Bank of India) 생명보험을 포함한 인도 보험회사 15개사는 IBM 등과 제휴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참여 보험회사 사이 고객의 의료기록을 공유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실증시험을 시행해왔다(Jason C. Hung et al. 2019). 현재 인도의 보험규제개발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 IRDAI)에서 실용화를 위한 허가가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한다.<sup>16)</sup>

지금까지의 인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위한 조건은 의사에게 의료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련의 의료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만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의료검사의 기록공유 등을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개별 보험회사는 진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sup>17)</sup> 또한, 고객들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새로운 의료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존의 검증된 의료기록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회사와 공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은 의료검사기록의 공유라는 데이터 처리와 보험사기의 감소 기대를 통해 15~25%가량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보험료 인하 및 고객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여타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생명 보험회사 15개

16) Asia insurance review의 “India:15 insurers in financial sector's first blockchain project”를 참고하였다(<https://bit.ly/38CnsLx>).

17)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참여하는 하나의 보험회사가 자사의 지정된 참가자(node)에 고객의 의료검사 기록정보를 올리면 다른 참가자 보험회사의 참가자(node)에 분산 저장하고 공유 상태가 된다. 고객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의료검사기록의 항목에 대해 어떤 항목이 특정 참여 보험회사 간에 공유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검사기록의 이전은 고객의 인지와 동의 없이는 실행되지 않고, 기록에 접근할 때마다 기록의 소유자에게 알리게 되고 동의 없이 공유될 수 없다.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IT 기업 카그너전트(Cognizant)와 제휴하여 보험회사 간에 보험금 지급 사례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을 2017년에 개발하였다.<sup>18)</sup> 인도 보험시장 전체에서의 보험가입 건수의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참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공유를 할 수 없는 보험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도 보험규제개발청(IRDAI)은 보험회사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정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Anusha Madhusudhan 2019).

## 마. 소결

앞서 알아본 B3i,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 인도에서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B3i의 경우에 블록체인 참가자들은 독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된 보험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블록체인 참가자들은 독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더 인스티튜츠 리스크 블록 조합(The Institutes Risk Block Alliance) 18개의 회사의 참여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제사항을 검토해야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미국 판례에서 정보교환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sup>19)</sup> 첫째,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품질과 양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할 것, 둘째, 교환된 정보로부터 타사의 장래의 문제를 직접 가늠하기 어려울 것, 셋째, 정보교환이 가능한 시장과 경쟁업자의 조건이 까다로울 것, 넷째, 정보교환 절차가 더욱 투명해야 할 것을

18) Cognizant의 “Inc42.com, India: Cognizant and Indian Insurers Jointly Develop Blockchain Solution For Secure Data Sharing”를 참고하였다  
(<https://news.cognizant.com/Inc42-Apr16-2018>).

19) Cardinal Health 기업결합 사건(1998)에서 연방 거래위원회로부터 새롭게 지정된 조건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의료 분야에 관한 내용이지만 다른 업종·분야에서도 정보교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법원 판결에 인용되고 있다. U.S. District Court of DC, 12 F. Supp. 2d 34. FTC v. Cardinal Health Inc.

요구하고 있다.

독일 보험협회는 “디지털화 특별판 No.1(DIGITALISIERUNG No. 01)”에서 블록체인 기술활용에 관한 사례의 분석 결과를 독일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에 위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Florian Baltruschat·Christine Jansen 2018). 나아가 독일 보험협회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경쟁시장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공정한 경쟁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IRSA 협정이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경쟁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IRSA 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인도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은 카르텔을 기초하여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 사항은 반경쟁적 행위로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합작 투자와 같은 형태로 맺어진 합의사항이 제품의 생산, 공급, 거래, 보관, 매입, 관리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해당 투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생명보험회사들의 의료검사기록 공유 및 보험금 지급 사례의 공유행위에 대하여 인도 경쟁법을 적용하자면, 모든 보험사에 대한 검사비용의 절감, 고객에게 검사진찰 부담의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의 공급, 거래, 관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III.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의 판단

#### 1.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반경쟁행위의 위배 여부에 관한 국제적 논의

##### 가. OECD 보고서의 분석

OECD는 2018년 4월 26일에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 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OECD 2018; 맹수석 2019). 이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경쟁행위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이용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에서 위반사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교환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경쟁법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공정거래법에서 어떠한 사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금지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Alastair Mordaunt and Paul Seppi 2017).<sup>20)</sup>

OECD 보고서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에는 통상적으로 참가자들이 합의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약관을 준수하여 사업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단독으로 이룩할 수 없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Breu, S. 2017). 이러한 논리는 2016년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이용가치를 인식하게 된 유럽의 경쟁법 연구자들이 컨소시엄에서의 정보공유, 가격 산출을 위한 참여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Alastair Mordaunt and Paul Seppi 2017).

20) 영국의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변호사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고려사항으로 정보교환 공모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이외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기업결합을 판단할 때 경쟁법 집행 당국에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기업결합 규제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경쟁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 검토

### 1) 유형의 개념과 분석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collusion through information exchange)는 블록체인 참가자가 블록체인에서의 거래를 통해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 경쟁력이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는 정보교환 공모를 공모(collusion)와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OECD 2018). 우선 공모(collusion)의 내용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경쟁조건 등을 공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명시적인 공모행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기록의 정확성, 투명성에 기초하여 공모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업조정행위(tacit coordination)가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조장되기 쉬운 이유는 참가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OECD 2018).

기타의 유형으로 합의된 알고리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Alastair Mordaunt and Paul Seppi 2017). 이 견해는 경쟁법에서의 쟁점이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교환의 공모에 머물지 않고, 기록된 정보를 참가자들이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Alastair Mordaunt and Paul Seppi 2017). 다시 말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선, 참가자 사이의 사전에 합의된 알고리즘에 따라 해당 거래가 원칙적으로 모든 참가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경쟁법을 집행하는 당국이 합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 반경쟁적인 법적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 저장, 교환되는 정보가 모든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쟁법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과거의 기록과 기술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협조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는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이다(Falk Schöning 2018).

## 2) 부당한 공동 행위의 해당 여부

OECD 보고서에서 언급된 “공모(collusion)”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21)</sup> 그리고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은 의사의 합의와 같이 공정거래법에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호영 2005).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특히,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에서의 의사의 합의는 사업자 사이에 상호 구속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업자의 가격 인상 행위를 인식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OECD 2018).

공정거래법에서 현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교환 및 공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컨센서스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자체의 공모성을 부정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및 알고리즘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특정 참가자의 거래 배제 또는 특정 외부인과의 거래를 먼저 배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Lin William Cong et al. 2019).

### 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검토

#### 1) 유형의 개념과 분석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abuse of dominance)는 블록체인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존 참가자가 자율적 경쟁을 방해(prevention)하는 행위와 신규 참가자를 배제(exclusion)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참가자가 특정한 경쟁업체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OECD 2018).

21) 법문에서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이와 같은 기존 참가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방해·지체 그리고 경쟁의 배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OECD, 2018). 구체적으로 첫째, 블록체인 기술활용의 방해·지체행위는 기존 참가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한다. 가령,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요구하는 로비(lobby)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컨소시엄에 의한 경쟁의 배제행위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는 접근이 가능한 기존 참가자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된다고 한다. 이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참여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OECD 2018). 이 배제행위는 유럽증권시장국(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자면, 처음부터 참가자는 신규 참가자에 대해 참가를 거부하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부당하게 어렵게 하거나 고비용을 부과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2017).

##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반 여부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에서의 방해 및 지체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판단하자면 전부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금지되어 있다(권오승·서 정 2017).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방해하여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행위자와 경쟁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은 구성사업자와 해당 거래처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4호에 의해 금지된다.<sup>22)</sup> 그리고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여,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4호에 의해 금지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저가 판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신규 참여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의해 금지되어있다(권오승·서 정 2017). 결과적으로 경쟁업체 사업활동의 계속 또는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라. 소결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만 신규 참여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신규 참가자를 위한 컨소시엄 운영규칙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당한 내용의 가입자격 요건 및 제명 사유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2.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에서의 부정청구 방지제도의 도입 제언

### 가. 도입방안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합리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공동이용제도를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

22)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 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여 보험회사들이 P2P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공유를 도모하거나, 시스템의 점점 보수 및 돌발적인 장애로 인한 가동중단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인프라 기능의 향상을 고려할 수 있다(김현수·권혁준 2018). 특히, 부정청구 방지제도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청구 방지제도는 단일 보험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보험사기 대책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가 협조하여, 보험료 청구정보를 밀폐된 블록체인에서 공유하여 보험사기의 판정과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블록에서 공유되는 정보 중에서 해당 사안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도 현행 시스템보다 쉽다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공동이용제도의 특징은 손해보험회사 등이 고객의 과거거래 정보, 보험청구 내용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각의 손해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정보수집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 비용대비 효율적이며, 보험료 절감의 일부에 소비자 이익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동이용제도의 활용은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sup>23)</sup>

#### 나.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위배 여부

블록체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유의 사항은 OECD 보고서가 언급한 대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정보교환 공모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참가자들이 합의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자율규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활용을 정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와 정보활동을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 비추어 검토하자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자율규제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 따르자면 반독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쟁수

23) 이 지침의 제정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 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을 제한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와 사업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 공공적 목적 등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는 아니다. 특히, 이용 및 준수는 사업자 임의 판단에 맡길 수 있고,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 따르자면, 가격 등의 결정, 수량 제한, 진입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사업 활동에 관련된 과거 사실에 대한 정보수집·공표는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sup>24)</sup> 손해보험회사의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약관이 경쟁 저해성이 없고 공정한 것이며, 정보교환의 기능과 역할이 공정거래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IV. 결론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기초로 B3i는 2019년 1월에 블록체인 보험 관리 솔루션을 보험시장에 출시하고 재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보험시장에서 크나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은 중개자를 배제하고도, 거래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보험산업에서는 일부 제한된 상품만을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산업은 인증모형을 준비 중이며, 향후 고객관리(KYC)와 보험금 지출 관련 내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혁신적인 기술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선 올바른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기술이 발전

24)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3. 사업자단체 활동에 관한 일반지침”의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에서의 (4)호는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를 제외하고 있다.

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효과는 소비자의 편의 증대이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보험사는 초기에는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보험 가치사슬 중 보상이나 판매에서 중개자가 배제되면서 더욱 효율화될 것이다.

OECD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저가 판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신규 참여자를 방해하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와 같은 공모행위는 경쟁업체 사업활동의 계속 또는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로서는 아직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의 경우 아직 민법에서 정의하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한 번 저장된 정보는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은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기술의 특징 및 산업별 특성에 기반하여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ranslated in Englis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8). *A Study of the influ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고용노동부 (2018),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Examination of construction plan for blockchain-based recruitment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 권오승·서 정 (2017),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제2판, 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won, O., and J., Seo (2017). *Monopoly regulation law-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Beopmun press.
- 김현수·권혁준 (2018),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보험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H., and H., Kwon (2018). *Blockchain utiliz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inspection and response*,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맹수석 (2019), “보험업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pp.69-93.  
(Translated in English) Maeng, S. (2019). Utilization of Blockchain in the Insurance Business and Legal Issues, *Korea Insurance Law Journal*, 13(2), pp.69-93.
- 서영희 외 (2017),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 제2017-004호.  
(Translated in English) Seo, Y., et al (2017).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Industrial and Social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SPRi Issue Report, No. 2017-004.

유거송·김경훈 (2018),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1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Translated in English) Yu, G., and K., Kim (2018). *Blockchain*, KISTEP Technology Trend Brief, 2018-0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이대희 (2018),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pp. 243-272.

(Translated in English) Lee, D. (2018). “Personal Data Issues in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ies”, *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 22(2):243-272.

이호영 (2005), “독점규제법상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의 규제”, **인권과 정의**, 제348호, pp. 42-67.

(Translated in English) Lee, H. (2005). “Regulation of Tacit Coordination by Oligopolist”, *Human Right and Justice*, Korean Bar Association, 348:42-67,

최용혁·권형영 (2018),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8권 제6호, pp. 1,607-1,621.

(Translated in English) Choi, Y., and H., Kwon (2018). “A Study on Legal Issues betwee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Deletion and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8(6):1,607-1621.

Anusha, M. (2019). *BLOCKCHAIN: A PRIMER FOR INDIA*, The 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 India, 1-98.

Breu, S. (2017). *Blockchains and Cybercurrencies Challenging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1-11.

Cognizant (2016). *The Blockchain Imperative: The Next Challenge for P&C*

*Carriers*, 1-20.

Enrico, A (2018). *B3i Codex1 Demo InsureTech - Europe Chapter of the CPCU Society*, 1-20.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2017).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pplied to Securities Markets*, 1-34.

Florian Baltruschat and Christine Jansen (2018). “Blockchain: Staat und Wirtschaft sind gefordert”,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 V.*, 1-5.

Jason C., Y., Neil and H., Lin (2019). *Frontier Computing: Theory,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FC 2018)*, Springer.

Lin William Cong·Zhiguo He·Jingtao Zheng (2019). “Blockchain Disruption and Smart Contract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32, Issue 5, 1754-1797.

Nicolas B. (2018). *L'innovation numérique, enjeu clé de l'assurance pour 2020*, CXP Group.

OECD (2018). *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 Issues paper by the Secretariat*.

PWC (2017). *Blockchain, catalyseur de nouvelles approches en assurance*.

\_\_\_\_ (2019). *Competing in a new age of insurance: How India is adopting emerging technologies*.

The Institutes CPCU Society (2018). *Unlocking the Power of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World Economic Forum (2018). “Building Block(chain)s for a Better Planet”.



##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was made up of a consortium of sever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technology of blockchain that can implement and utilize the consortium violates the law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The OECD published a report titled "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which raised the issues that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could bring to competition law. The OECD said the use of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could lead to act that impair fair trade, such as public offering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abuse of market dominanc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stitutional base for utilizing the consortium blockchain in the insurance indust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echnology and industry,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must be prepared.

※ **Key words:** consortium blockchain, insuranc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ti-competitive behavior, abuse of market dominant status

